第252回國會 (臨時會) 國會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法案審査第2小委員會)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5年3月2日(水)

場 所 財政經濟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발의)(계속)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종걸 의원 발의)(계속)
3.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4. 國會法中改正法律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5.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계속)
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계속)
7. 國會法中改正法律案(천영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8. 國會法中改正法律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9.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國會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발의)(계속)
13.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계속)
15.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계속)

審査된案件

(11시21분 개의)

○소위원장 문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달 25일에 우리가 2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15건의 계류안건은 물론이고 위원님들 각자 추가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하기로 합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 소위원회 향후 운영일정 등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소위원장인 저하고 노현송 위원님, 손봉숙 위원님, 정병국 위원님, 정두언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의총이라든가 법사위 관계 때문에 출석을 못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뒤로 자꾸 미루면 언제 논의가 시작이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세 분밖에 현재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손봉숙 위원 예.

○소위원장 문석호 정 위원님은……

○정병국 위원 예.

○손봉숙 위원 지난번에 올라와 있던 것을 차례대로 하나씩 의견을……

○소위원장 문석호 예, 그러시지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안건 주요내용이라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한 번 개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봉숙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지요.

○손봉숙 위원 의원석방요구안 발의요건을 20인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로 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 생각에 어저께 원칙적인 논의도 있었지만 우리가 국회개혁을 한다고 해서 너무 여론에 휩쓸려서 안 해야 될 것도 등 떠밀려서 개정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입법을 했었는가 그 입법취지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법안이든지 다른 것도 발의요건을 자꾸 강화해 놓으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같이 의논을 좀더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이나 석방요구안의 경우 대상의원 표결배제는 바람직하지만 체포동의안·석방·임명·해임·파면까지 포함해서 인사안건에 대한 공개투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비밀투표로 하면 소신껏 할 텐데 공개투표를 하면 소신껏 투표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론에 따라가서 투표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과연 공개를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72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이게 의정활동의 방해목적이 아닌 때에는 체포동의안의 부결 또는 석방요구안을 가결할 수 없다에 대해서는 손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을 공개투표로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역사를 보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공개투표로 하게 되니까 위의 눈치를 보고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투표로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또다시 공개투표로 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개투표로 했을 경우에 본인 의사와 반하는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 비공개로 하면 내 식구 감싸기 식으로 한다는 취지 때문에 공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는……

○정병국 위원 그것은 저는 동의하고 그 부분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발의요건에 대해서는……

○정병국 위원 발의요건도 저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현송 위원 저는 거기에 표시된 대로 대체로 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편인데요.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전자투표 실시에 관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취지 자체가 지금까지, 지금은 옛날과 같이 그렇게 국민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지도부의 눈치를 보거나 하면서 자기 의사를 소신껏 표현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 쪽으로 갈 우려가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비공개로 하는 것보다 공개로 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대통령 눈치나 총재 눈치 많이 봤잖아요? 특히 그것이 공천권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들 따라서 했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소신껏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더 소신껏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당 지도부나 누구를 의식해서라기보다 그런 반면에 다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료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인사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거와 같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문제라기보다 수평적 관계에서의 문제지요. 따라서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직적 관계에서 그렇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한다거나 하는 측면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평적 관계에서, 인간적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더 반대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과거와 또 다른 상황의 변화

속에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 역효과가 더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봉숙 위원 그리고 요새는 총재 중심의 그런 정치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시민단체, 시민단체 자체도 굉장히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당시의 여론에 휩쓸려서 잘 생각하게 되고 특별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실 내 친구가 잘못한 것을 뻔히 알지만 우리나라는 친구를 감싸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투표하기는 힘들지만 숨어서 하면 내가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료 의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좀……

○정병국 위원 이것은 지난 16대 때 한 번 있었고 17대 들어와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식구 감싸기, 우리 의원들 끼리끼리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을 경우에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과거와 비교해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판단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공개투표를 했을 경우에 어떤 외부적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봉숙 위원 이종걸 의원 것이나 이계진 의원 것도 결국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소위원장 문석호 우선 논점을 정리하기 위해 노현송 위원님께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공개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처리시한을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노현송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그리고 20인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발의 요건을 좀 강화하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송 위원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정두언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는데, 자료 한번 봐 주실래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안건 주요내용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처리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두언 위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손봉숙 위원 발의 요건을 이렇게 높여 놓으면 우리가 양당제로 갔을 때는 문제가 간단하지만 다당제로—앞으로는 아무래도 다당제로 갈 우려가 있는데—갔을 때는 소속 정당에 따라 굉장한 편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발의 요건은 그 당시 당시의 정치지형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이 아닌데 무조건 4분의 1로 한다는 것은 거의 75명에 가까운 사람이 발의를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높일 경우—지금은 양당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5당 체제이고 30석 이하의 정당도 수두룩한데 이 발의 요건을 75석까지로 올려놓아 버리면—과연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만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당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발의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어떤 발의를 했을 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보거든요.

○손봉숙 위원 아니지요. 소수정당의 입장에서는 통과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발의만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은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못 하게 하는 것은 그냥 수로 눌러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명에서……

○정병국 위원 그런데 역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요구안을 발의하는 것을 강화한다고 해 가지고 부작용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측면도 또 없지요.

○손봉숙 위원 발의 요건 4분의 1이라는 것은 엄청 큰 수거든요. 4분의 1을 숫자로 계산해 보시면……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손봉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현송 위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것은 발의하지 말자,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손봉숙 위원 그렇긴 한데 이것은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의 한 과정까지를 원천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명이 발의하면 통과가 안 될 것 아니에요? 통과가 안 되면 그만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것을 발의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20명을 30명으로 늘린다는 것도 아니고 4분의 1로, 갑자기 75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꼭 이래야 되나……

○소위원장 문석호 어쨌든 소수정파 입장에서 또……

○손봉숙 위원 아니, 제가 평생 소수정당 할 것도 아니고…… 아니겠지요.

○소위원장 문석호 예, 현재의 애로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손봉숙 위원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발의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6대 때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국민들로부터 '합법적 탈옥이다' 하는 비판을 받았고, 그것이 결국 석방 요구나 체포동의안과 연관되어 국회에서 계속 의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 극히 실망을 주는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인이 거의 9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춰 우리 스스로의 주권을 좀 제한해 보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국회의원들 윤리의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민들이 국회나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달라진 바는 없다고 봐서 공개투표라든가 발의 요건 강화라든가 처리시한의 명시 부분을—저희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해서가 아니라—꼭 이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절차와 요건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좀 불리한 쪽으로 어느 정도 바꿔 놓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논의를 해 보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로 가져가든지 해서 공청회라든가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갖도록 하면 되겠지요?

○손봉숙 위원 예, 이것이 사실 석방 발의 요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문석호 그렇지요.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다음은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 공무원, 재정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 법무법인·변호사사무소 관련 직 등을 겸직 제한 사항에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감할 사항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저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경우는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겸직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재의 상태를 보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측면에서는 3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는 측면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타 변호사까지 겸직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상태 속에서 유독 변호사만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겸직 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업무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기업체의 고문변호사 직을 하면서 물의를 일으키지만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몇 차례 보도되면서 대부분 다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일반 사회적 감시 기능으로 충분히 감시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봉숙 위원 사실 국회의원 직 자체가 풀타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국회의원이면서 변호사인 분들이 변호사 업무, 현실적으로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변호사이더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 임기 동안은 변호사 직을 잠시 안 하는 게……

○정병국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꼭 변호사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모든 직에 겸직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왜 유독 변호사만 제한을 하느냐……

○소위원장 문석호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더 진행하기 전에 그동안 전문위원이 검

토한 사항이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외국의 입법 사례하고 우리의 국회법이나 공무원법에 겸직 제한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전문위원 김대현 현재 겸직 금지 대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고요. 대통령, 헌재 재판관, 선관위 위원, 지방의회 의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소위원장 문석호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대현 외국의 경우는 의원이 장관직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국가들이 좀 있다고 그러고요. 일단 미국은……

○소위원장 문석호 전체로 봐서요.

○정병국 위원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는 겸직이 되고 대통령중심제는 완전한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면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 프랑스도 장관 겸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정병국 위원 거기는 대통령중심제니까요.

○전문위원 김대현 그렇습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브라질, 코스타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의회 다수당이 집권당이 되기 때문에 허용하는 국가가 다수이지만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가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경우 차점자에게 의원직을 양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벨기에와 스웨덴은 장관직에서 퇴임할 경우 의석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결국 국무위원 겸직이라고 하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봉숙 위원 아니, 지역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의원으로 뽑아 놨는데 이 사람이 구민의 의사와 반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대체할 사람이 없잖아요?

○정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풍토는 내가 여당일 경우에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장관 자리를 맡아 놨다. 내락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역으로 그것을 활용하지요. 그런 것들은 어떤 기대치에서 오는 것이냐, 장관을 하게 되면 장관이 가지고 있는 부처의 이익 중 많은 부분을 지역구에 할애할 수 있다는 그런 부당한 측면도 있고 3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것에 찬성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정 위원님은 찬성하시고, 손 위원님도 찬성이신가요?

○손봉숙 위원 예, 저도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 같은 것은 겸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문석호 그다음에 변호사는요?

○손봉숙 위원 글쎄요,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안이니까…… 그다음에 기업인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한 영리활동을 유지하게 할 수 없고 이러면 변호사가 거기 들어가야 될 테니까…… 국무위원으로 축소를 하지요.

○소위원장 문석호 사실 이 부분은 대통령제, 내각책임제라는 정치체제에 의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결단, 또 입법적 태도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책임총리제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상당한 성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겸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핵심적으로 내걸고 있는 분권형 통치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 이념이나 신념을 마치 막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헌법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적 과제로 선정해서 입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서, 통치구조와 맞물려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 공약사항으로 당정 분리의 원칙을 말씀하셨고, 취임 초기에는 현역 의원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는 것을 인사원칙으로 삼고 발표했던 부분이지요. 당정 분리의 원칙, 그 고리를 거기서부터 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분권형 또는 책임형 총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역 의원이 총리를 하기 때문에, 또는 현역 의원이 주요한 포스트의 장관들을 하기 때문에 분권형 또는 책임형 행정부의 운영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이나 초반에 출범했을 때의 인사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법으로 규정하면

굳이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그것을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런 공약을 내걸었을 때에는 겸직으로 인해 당정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3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약을 내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정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소위 당정 분리라고 하는 것의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정병국 위원 그 당시에 그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당정 분리라고 하는 것은 당의 당직 인선, 공천 등 일반적인 당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당정 분리고요.

그다음 정부 여당은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행정부에 참여해서 대통령과 함께 무한책임을 지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리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역 의원 몇 사람이 입각을 해서 대통령과 책임을 나누어 갖고, 그런 모습은 결국 집권당이 책임정당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 논리하고 현재의 체제가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손봉숙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하는데, 노무현 이런 저런……

○정병국 위원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손봉숙 위원 전혀 우리 애초의 목적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현 정권이 어떻게 가는가 이런 것을 떠나서 국회가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바람직한 입법부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노무현……

○소위원장 문석호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집권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병국 위원 소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소위원장 문석호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문석호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명분론이나 책임론 못지않게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야 한단 말입니다.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 4명이 입각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을 못 바꾼다면 그 양반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명분만 이야기한다면……

○정병국 위원 그것은 당장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법 개정이 아니지요. 장기적인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분들을 겨냥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컨대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개혁특위가 앞으로 진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봉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개정안이 나온 것에 대한 개인의견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현행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을 막론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은 의원이 겸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이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개인 의견을 말한다고 이것이 통과될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정부 정치체계를 대통령중심제로 갈 것인지, 의원내각제로 갈 것인지, 중임제로 갈 것인지, 또 중간에 지금과 같이 적당히 믹스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갈 것인지, 이원집정부제로 갈 것인지 등 권력구조 문제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개인의 의견을 받으시고, 공청회를 한다면 이 안도 한번 내놓아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소위원회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일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현실적인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학계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유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기 때문에 당장 어느 것을 채택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공청회에 이슈로 해 보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 위원님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정병국 위원 예,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위원장 문석호 아니지요, 의견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전체회의에 다 넘길 텐데 한 번 더 토의를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정치는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소위원장 문석호 전체회의에 넘긴 다음에……

○손봉숙 위원 삭제를 해 버리고 그렇게……

○소위원장 문석호 전체회의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청회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 일단은 여기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합의된 것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합의되지 않은 대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그러고 논의할 것이니까……

○소위원장 문석호 그리고 오늘 일차 논의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손봉숙 위원 저희들도 시안으로 가지고 온 것이니까요.

○소위원장 문석호 그것은 더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논의를 일차적으로 한 부분을 다시 다음 소위에서 또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된 부분은 논의된 대로 보고를 하고 그냥 표결을 해서 표결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일껏 논의를 해 놓았는데 다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논의하게 되고 그러면 언제 이것이 진행이 되겠느냐……

○소위원장 문석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찬성하고 반대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요약해서 나중에 전부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토론 논의 결과를 이어가면서 추가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인 '국회의원 윤리심사 및 윤리특위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넘지 않게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윤리특위에 대하여 위반사실 통보 및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위가 3개월 내에 심사를 종료를 못할 때에는 안건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조항을 삭제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손봉숙 위원 전체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고 국민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문제의 본질은 의원들이 스스로 발목을 못 자르니까 족쇄를 못 채우니까 누가 밖에서 와서 걸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국회 안에서 스스로 윤리위원회가 있으면 윤리위원회가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면 이런 얘기가 안 들릴 텐데, 계속 국회의원은 서로 감싸니까 결국은 의원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외부 인사를 넣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윤리를 못 지켜서 외부인사들한테 결국 지켜달라는 주문인 것 같아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정병국 위원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대현 제 기억으로는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관 곽명섭 미국하고 일본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모두 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히 국회 안에 있는 위원회에 과연 국민의 대표가 아닌 외부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가능한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요. 미국 내에서도 윤리위원회가 약화되고 있다고 그래서 외부인사를 참여시키자는 논의는 있었다고 하는데, 그 논의가 그런 위헌 소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의원들의 반대로 흐지부지한 상태라고 합니다.

○손봉숙 위원 그러니까 그 특위에 넣는 것이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로 자문기구 같이 두어서 한다는 정도인 것 같은데, 구속력이 없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압박수단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 자율성 침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나온 안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 윤리특위가 3월 내에 심사 미종료 시 안건 폐기 조항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3월이면 3월, 5월이면 5월 내에 처리를 하도록 강제조항을 두게 되면 어떤 결과든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을 또 받을 거란 말이지요. 지금과 같이 국민적 감시체제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관심이 많은 상황 속에서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길 수 없는 조항만 만들어 놓게 되면 일단 가부간에 3월이면 3월, 5월이면 5월 내에 판단이 나오게 되고 국민적 심판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굳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손봉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성격에 따라서 심사를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6개월이 걸릴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몇 개월 내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3개월 내에 미종료해도 안 되면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안건으로 살아 있다는……

○정병국 위원 안건으로 살아 있는데 거기서 유야무야 계속 지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안이,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박게 되면 6개월 이상을 우리가 조사해야 될 사안이라면 윤리위에 제소될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손봉숙 위원 그래서 민간자문기구를 두는 것이 강력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고 어차피 윤리특위 안에 민간인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징성을……

○정병국 위원 저는 크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손봉숙 위원 그냥 상징적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특위를 안 하면 이런 데서 자문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의견이었다 그렇게 나오면 특위가 법적인 구속은 아니지만 조금……

○정병국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요. 다만 윤리특위의 3개월 내 심사 미종료시 안건 폐기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둬서 6개월 내에 심사 완료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손봉숙 위원 사안이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예를 보면 6개월씩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냥 3개월이라고 하지요.

○소위원장 문석호 3개월 이내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봉숙 위원 그러면 6개월로 너무 길게 잡지 말고 3월이라고 하지요.

○정병국 위원 3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면 한 번밖에 못 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이상은 국회가 열리는 기간에 심의를 해야 되니까 윤리특위가 휴회 중에 와서 이것을 할 리도 없고 6개월 정도로 잡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지금 윤리특위에서 윤리특위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개선방안이랄까 제도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법제관 곽명섭 공청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 저희들이 공청회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공청회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법제관 곽명섭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인사들의 참여여부가 핵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문제됐던 것은 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자문위원회로 두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대 함성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대표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다, 그다음 두 번째 논거는 국회의 본질적인 국민대표성을 훼손한다, 그다음에 대의적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국회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에서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예외라도 둬서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자문위원회를 뒀을 경우에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개협 두고 있는 것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금 국회의장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구성에서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사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 형태는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이 문제는 윤리특위에서도 공청회까지 했다니까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두 분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통제가 잘 안 되니까, 우리끼리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으로서 심의를 개시하느냐 마느냐 하는 여부는 결정은 우리가 하더라도, 외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심의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정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지요. 괜찮으시겠지요?

○손봉숙 위원 예.

○소위원장 문석호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폐지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손봉숙 위원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밖에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도 교섭단체가 갖고 있는 특권이 이렇게 횡포에 가깝다는 것은 직접 체험을 못해 가지고 국회에 와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법안을 냈는데, 교섭단체라는 것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교섭단체를 둔다, 20명 이상이면 된다는 정도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섭단체라는 것이 “둘 수도 있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인 기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권도 너무 많고 국회운영위원회를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국회운영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하고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 준 정당구도대로 각 정당의 원내대표를 좀더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천영세 의원이 내신 것은 2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바꾸자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적인 유형을 다 조사해 보니까 미국·영국을 비롯해서 교섭단체가 없는 나라가 훨씬 더 많고요, 있는 경우에도 최고로 높은 경우가 독일인데 독일이 5%였습니다. 5%가 가장 많았는데 우리는 지금 비율로 따지면 7.5% 정도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높은 나라는 어느 경우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내릴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비례대표 의원을 선정할 때 봉쇄조항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구 5인이나 전체 유효투표의 3% 이상 이런 것이 봉쇄조항으로 들어와 있어서 정원의 한 3% 정도면 좋지 않나, 예를 들면 350명가도 20명이 할 것이냐 이래서 퍼센티지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 의견이 나와 있는 대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같은 것도 일단 사람이 살림을 하려면 방·부엌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각 정당들이 정책연구위원을 둔다면 두 명씩 다 돌리고 나머지를 갖고 의석비율로 돌린다든가 이런 것은 말이 되지만 비교섭단체도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명의 정책연구위원도 안 둔다는 것은 그것이 형평에 맞나, 정책정당으로 가겠다는 취지에도 틀린다 그래서 이런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것이 차라리 없든지, 있으려면 모든 정당에게 기본적으로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배정하고 나머지…… 지금 60명을 갖고 두 당이 나눠 가졌거든요. 그러면 5명씩 돌리든지 2명씩 돌려서 10명을 먼저 갖고 나머지 50명을 가지고 의석수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석 보유 정당이 예결산특위 같은 데는 적어도 한 명씩은 위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비교섭단체 두 석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아무리 정당의 대표성이 작아도 기본적인 것에 대한 우선배정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모든 의석 배정에서부터 운영일정 이런 것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원내대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개의를 언제 하고 개원을 언제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만날 싸우잖아요. 이런 것이 국회법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국회법을 국회가 안 지킬 때에 대한 제재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우리가 국회개혁을 제대로 한다면 적어도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국회가 지키도록 하는 구속력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총선 이후에 언제부터 개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두 당이 싸우면 한 달도 안 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섭단체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고 결정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 개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손 위원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정당별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의석수로 배분을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의원이 한 사람 있는 정당에도 배정을 해야 된다는 역차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역시 “의석 보유 정당은 정당별로 원내대표의원을 정하도록 하고 원내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명이나 두 명 있는 정당도 참여한다고 하면 한 명이 정보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석 보유 정당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1석씩 우선 배정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본회의장 의석 배정, 연간 국회운영일정 작성, 국회사무총장 임명 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던 것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다” 하는 부분은 앞에서 전제되었던 몇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개의시간 및 의사일정 변경, 본회의 비공개 결정 등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던 것을 의장이 정하도록 함” 이것은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 이것도 소신껏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역대에 죽 보면 많았다, 이것은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 선임 및 본회의 발언 의원수 및 시간 등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던 것을 정당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무소속의원 등에 대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함”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의·토론은 각 정당에서 1인 이상 발언한 후 종결하도록 함” 하는 부분도 1인이 있을 경우의 정당, 이 부분이 오히려 역차별적이다……

그리고 “법률안의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 경과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예외규정 삭제” 이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지금 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측면들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의석이 한 석 있는 정당까지 다 배려해 가지고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부당하게 20인 이상 과도하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정함으로 해서 보는 피해들은 배제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봉숙 위원 좋습니다. 저는 완화도 찬성이니까요.

○소위원장 문석호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손봉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책연구위원을 어쨌든 교섭단체 간에 독식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든 안 하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정병국 위원 전체 연구위원 수를 놓고 의석수별로 비례로 배분할 수는 있겠지 요.

○소위원장 문석호 그것은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병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화하면 또 완화하는 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일 같고요, 앞으로 더 논의하도록 하고 넘어가시지요.

다음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의 주체를 현재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 의결로 가능하도록 하자……

○정병국 위원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전문위원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입법조사관 정영진 감사원에서 받은 의견에 의하면 지금 현행을 수용하기도 너무 벅차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도에 6개 사항이 접수되어서 한 사항당 평균 13명을 5개월간 투입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개 위원회에서 연간 두 개 이상씩만 청구하더라도 감사원 인력의 절반 정도는 투입해야 된다고, 약간 엄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 의결로 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감사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본회의에 올라와 가지고 부결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소위원장 문석호 과거에 KBS 문제가 있었고요.

○정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상임위 자체에서 하는데 쉽게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감사청구 요청을 하게 되면 여야 간에 시각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회를 원내 중심의 국회, 정책 중심의 국회로 가는 데 있어서 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을 세워야 되고, 좀더 나아가서는 소위원회 중심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보다 더 내실 있는 정책 중심의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를 감사청구 주체로 변경해도 별 무리가 없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결국 소위원회 중심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상임위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주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그런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상임위원회는 표결하는 절차적인 문제만 다루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손봉숙 위원 앞으로 국감도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국감을 상시국감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정부질문 같은 것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찬성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는 감사원에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감사원 업무에 오버 로드가 걸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을 파악한 다음에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은 자료요구 및 서면질문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손봉숙 위원 서면질문이나 서류제출의 답변기한을 단축하자는 것인데 저는 빨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또 노현송 위원님 의견을 보니까 5일로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개별 국회의원에게도 서류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문과 서류제출요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소속 상임위가 아닌 타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문광위 활동만 해도 산자위에도 걸려있고 정무위에도 걸려있고 사방에 걸려있거든요. 그러면 타 위원회라고 서류를 안 주면 위원회를 서로 나누는 것은 편의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그것 때문에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상임위를 넘어서 폭넓게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데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답변기한 단축은 의미가 별로 없

다고 봐요. 현재도 의원이 해당 부처에다가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제출기한에 맞춰서 제출되더라고요. 이것은 별로 큰 문제는 없다, 개정할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개별 국회의원에게 서류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요구하는데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문과 서류제출요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당연히 개별 의원이 요구하게 되면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소속 상임위가 아닌 타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서도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두 분 의견하고 제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요구권을 개별 국회의원에게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개별 의원들한테 서류제출요구권을 부여하게 되면 국정감사 때 몇 트럭분의 자료가 오는데 평상시에도 그런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나 피감기관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스크린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상임위가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보완책이랄지, 너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개별 국회의원에게도 서류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논의해 보지요.

○정병국 위원 결국은 현재 개별 의원이 요구하면 실질적으로 다 주잖아요. 오히려 상임위 의결을 거치는 것이 형식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문화된 법규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소위원장 문석호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논의하시도록 하고요.

인사청문회 대상확대까지만 할까요?

○손봉숙 위원 저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앙선관위원 같은 것도 국회가 선출하는 경우는 선출직이니까 그렇지만 대법원장은 임명해서 하는 것인데 대법원장 임명까지도 확대해야 될까,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재판관이나 중앙선관위원의 청문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관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인사청문회 대상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는 한번 검증을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부담도 덜게 되고, 정부에서 많은 검증절차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지만 역대 정권 때도 보면 많은 에러가 나오고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임명 받고 하루만에 그만두는 장관도 있고 그런 경우가 문민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장관에 대해서 일방적인 공세만 취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 정치적 공세를 막는 차원에서도 임명하는 과정 시에 검증하는 것을 국회 상임위 차원 정도에서 거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각부 장관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조항을 더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재판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 특히 헌법재판소재판관이 과거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였는데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에 권한이 막강하구나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검증절차가 없지요?

○손봉숙 위원 청문회합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하지요? 그리고 대통령 추천 몫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지요?

○법제관 곽명섭 안 합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그다음에 대법원장 추천 몫도 안 하지요?

○법제관 곽명섭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워낙 권한이 막강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능력과 도덕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또 선관위원뿐만 아니라 누가 지명하든지 누가 임명하든 간에 전원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요.

○손봉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은 청문회 대상이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문석호 이 안보다 더 전향적으로 가보자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장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인사하는 자리에서 사실상의 검증이 되는 것인데……

○정병국 위원 아니, 임명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전장치를 만든다고 보거든요.

○소위원장 문석호 임명하기 전에……

○정병국 위원 누가 대통령을 하든 간에 상당히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문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기술껏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실 각료 임명이라는 것이 임명장 주는 순간에 임명이 돼 버리고 마는 것이고 또 현재 임명절차가 복수추천제 해 가지고 여론을 통한 검증을 거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오래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고……

○정병국 위원 그것은 기한을 얼마 주게 되면, 새롭게 장관을 임명하게 될 때 상임위가 즉시 열려서 며칠 내에 해라 그런 규정을 주게 되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절차나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잘해 봐야 됩니다.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뒤에 몇 가지는 간단간단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대상 확대는 끝난 것 같고요, 공직후보자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 납부실적이 3년치로 돼 있는데 5년치로 연장하자,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실적도 추가로 요구해서 받자 그런 얘기인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저는 꼭 5년까지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문석호 5년이라는 얘기는 국세 납부 시효하고 연관된 것 같고요, 그 이전 것이야 어차피 문제가 있어도 받아내기도 어려운 건데 5년이 시효기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요구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건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손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봉숙 위원 예.

○소위원장 문석호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이 발의하신 건데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제출시한을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변경하자, 미리 받아봐야 읽어 보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출 자료에 금융거래실적도 포함하도록 하자, 민감한 얘기네요. 대상 범위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타 법규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자.

정 위원님도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 답변 제출시한이 24시간 전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리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금융거래실적을 자료에 포함시키자. 법에 꼭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안 해도 요구하면 되는데 말이지요.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제출대상 범위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김대현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나중에 보고를 듣고 더 논의하지요.

그 밑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이 부분도 방향은 맞는 것 같지요?

○정병국 위원 예.

○손봉숙 위원 그런데 단서가 필요한 것이 각 의원들도 정부의 대외비 문서 처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트럭 받아다가 남한테 턱 갖다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상호보완적인 조항을……

○소위원장 문석호 하여튼 방향은 맞고,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보좌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봉숙 위원 법률로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법률적으로 기재한다고 하는 게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진짜 의원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가 다 놓치게 되잖아요.

○소위원장 문석호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요.

과제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각 부 장관까지 인사청문회를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정부질문하는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정쟁의 시발이 저는 대정부질문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듣는 답도 부실하기 짝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 서면질문을 통해서 정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 이를 토대로 일문일답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또 모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갖고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 예를 들어서 정치분야다 그러면 정치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 위원들 중심으로 예결위장 같은 데서—좌석에 이름을 붙여 놓을 필요가 없이—질문을 하고 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하고요. 아예 여야 의원들의 자리를 딱 배분해 갖고 앉아서 하게 되면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질의응답이 되고 정략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대정부질문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쪽에서 상임위별 연중 수시감사를 하자. 손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2월이나 4월 임시회의 때 논의하는 것이 심도가 없고 업무보고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2월 국회에서는 어느 어느 기관을 감사한다 또는 4월에는 어느 어느 기관을 한다 이렇게 분배해서 연중 하게 되면 보다 더 심도 있고 그때그때 현안문제에 따라 가지고, 축적해 놨다가 막판에 가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을 개정했으면 싶어요.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세비라고 하는 명목을 주고, 보좌관들이 있지만 보좌관들도 추천은 의원이 하지만 임명은 정부에서 하게 되는 식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면서 효율적이지 않다, 기관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 의해서 미국식 의원실 총액예산제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이것을 안으로 제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2소위가 아니고 1소위의 안인데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같이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문석호 좋은 제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봉숙 위원 국정감사제도를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2조1항 국정감사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감사는 각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2조2항을 고쳐서 각 상임위원장이 소속 위원들과 협의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서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정감사가 연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각 임시회별 질의나 감사대상기관의 수도 제한해서 중요한 기관은 두 차례 하든지 분기별로 할 수 있지만 그 외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를 연중 한 차례 정도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각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감사대상기관의 수를 너무 확대해 버리면 형식으로 흐르니까 일정한 수를 정해서 아예 국감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선거법, 각종 형사소송 등의 소송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에는 피선될 수 없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위원장직이 굉장히 막중한데 그 비중을 고려해서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장의 선출에도 이런 조항이 적용돼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경

우에는 위원장직을 못 맡도록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장 자리배치, 상임위원회 선택 이런 것을 비교섭단체는 의장이 한다 이런 것들, 본인의 의사존중의 방법이 뭐겠는가? 자리배치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상임위별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두 당은 항상 위원들끼리 가깝게 만날 수 있는데 비교섭단체만 뚝 떨어져 있습니다. 두 교섭단체는 의총에서 자주 만나서 의견교환이 되는데 우리는 의총도 같이 안 하는데다 자리배치도 같이 안 하고……

○정병국 위원 그게 국회법상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문석호 법상 규정은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그 관행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본회의장도 여야를 나눠놓지 말고 상임위별로 섞어야 정쟁이 안 벌어진다고 봐요.

손 위원님의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자격 관련해서 덧붙인다면, 위원장 선출 시에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고 가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후보자를 하루나 이틀 전에 공시해서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안도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문석호 법률로 가야 될지 규칙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필요하다면 법에도 규정을 하지요.

○소위원장 문석호 의장이나 부의장 선출과 관련된 안이 올라와 있는데 누군지 얼굴은 한 번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전결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채택 가능한 바람직한 안 같아요. 상임위원장도 그와 유사한 입장에서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를 언제쯤 열까요?

○정병국 위원 3월 말에……

○소위원장 문석호 각자 일정도 있고, 열린우리당 경선도 있어서 3월 한 달이 상당히 바쁜 일정입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4차 회의는 4월 첫 주 임시회 개회하자마자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오늘 토론된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각 방에 주시고 오늘 두 분이 제안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를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김대현 3월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석호 집중적으로 해서 4월 초에는 결론낼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고 내기 어려운 것은 전체회의로 넘겨서 결정을 아예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出席委員(5人)

노현송 문석호 손봉숙 정두언 정병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대현

○其他參席者

법제관 곽명섭